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차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사항 확대 등〉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30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다례 계승·발전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2
가. 관계기관 의견	2
나. 검토의견	3
2. 차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사항 확대	7
가. 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현황	8
나. 안 제17조제1항: 학교에서의 차문화 교육 경비의 지원	13
1) 관계기관 의견	14
2) 검토의견	14
다. 안 제17조제3항 신설: 차문화체험장 조성	17
1) 관계기관 의견	17
2) 검토의견	18
라. 안 제17조제4항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차문화 교육 경비 지원 ...	21
1) 관계기관 의견	21
2) 검토의견	22
3. 부칙(시행일)	2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5. 3. 7.

3. 회 부 일 : 2025.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차문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례(茶禮) 교육은 차를 마시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절하는 법, 바른 몸가짐 등의 차를 매개로 하는 예절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다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문화 진흥을 위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다례 포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례 등의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다례 계승·발전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개정안은 차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현행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차문화가 ‘다례(茶禮)’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다례에 대하여도 계승·발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차문화의 계승·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차문화를</u>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차문화의 계승·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차문화[다례(茶禮)]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현행법상 차문화의 정의¹⁾에 ‘다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16조에서 차문화에 별도로 ‘다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2) 한국차 자조회²⁾

차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에 다례를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차를 품목으로 하는 의무자조금단체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차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보급·지도 등의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는 현행법 제16조에서 ‘다례’가 차문화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의 계승·발전에 대하여도 보급·지도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례(茶禮)의 사전적 정의는 “차를 대접하는 의식”으로,³⁾ 제사·불교의식·왕실의례 등의 경우는 물론,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차를 우려마시는 경우 또한 포함됨.⁴⁾

다례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다도(茶道)가 있는데, 그 사전적 정의는 “차를 달이거나 마실 때의 방식이나 예의범절”을 뜻함.⁵⁾

다례와 다도는 그 정의가 유사하고, 혼용되는 측면이 있어 그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두 용어 간 관계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여, 명확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다례란 다도의 핵심적인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나, 심오한 도(道)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예의범절로 보는 견해가 있음.⁶⁾

이는 다례와 다도가 두 번째 글자를 각각 예(禮)와 도(道)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예와 도’의 관계를 토대로 ‘다례와 다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5. 3. 25. 확인

4) 최소연, “다례(茶禮)는 배려하는 마음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랑」 통권 제180호, 2019.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5. 3. 25. 확인

6) 정상구, 「한국다문화학」, 세종출판사, 1995, pp. 28~36.

한편, 유사한 정의를 가지는 다례와 다도 중에서, 한국에서는 다례를, 일본에서는 다도를 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다례와 다도를 동일시하되, 다도를 다례의 일본어 투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다만, 최근 국립국어원은 인터넷 문의처인 “온라인 가나다”에 제기된 관련 문의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으나 다도가 일본어 투 표현에서 왔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⁷⁾

< 다례와 다도 >

구분		다례(茶禮)	다도(茶道)	비고
사전적 정의		차를 대접하는 의식	차를 달이거나 마실 때의 방식이나 예의범절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유사한 정의
양자 간 관계에 대한 일부 견해	1	다도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나, ‘심오한 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	다례에 비하여, ‘심오한 도’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는 견해	- 예(禮)와 도(道)의 관계를 토대로 한 견해
	2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견해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일본어 투 표현이라는 견해	- 최근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 서는 <u>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u> 답변을 함

자료 :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4. 18.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법」”이라 한다) 제5조⁸⁾에 따라 지난 2016년 수립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7)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다도(茶道)는 다례의 일본식 표현일까요?”, 2025. 3. 25. 확인,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308677

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레와 다도를 각각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다도·다레”라는 표현을 통하여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바, 두 용어를 크게 구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차를 대접하는 의식”을 뜻하는 다레 역시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중요한 문화적 요소임을 고려하면, 다레의 계승·발전에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안 제16조에서 ‘차문화’가 ‘다레’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나, 현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차문화의 정의를 고려하면 별도로 다레를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현행법 제2조제4호는 차문화를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으로 정의하면서, 그 예시 중 하나로 다도를 들고 있음.⁹⁾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레와 다도는 유사성을 보이므로, 현행 「차산업법」에 따라 다도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면 다레의 계승·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되고 있는 ‘차문화’에 대하여 안 제16조에서만 ‘다레’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 경우 ① 다도는 모든 경우에 차문화에 포함되고, ② 다레는 안 제16조에서만 차문화에 포함됨.

유사성을 보이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두 용어 중 어느 하나는 정의 규정을 통하여 모든 경우에, 다른 하나는 안 제16조에서만 차문화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향후 법 해석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제16조에서만 ‘차문화’에 ‘다레’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차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사항 확대

개정안은 ① 학교에서의 차문화 교육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② 차문화체험장 조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③ 아동·청소년 대상 차문화 교육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차문화의 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u>연구·개발</u>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u>시설·장비</u>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u>연구·개발</u> ,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u>시설·장비</u> 및 <u>차문화 교육에 드는 경비</u> 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u>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u>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서 <u>아동·청소년에게 차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이 경우 지원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현황

현행법 제2장에서는 차문화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교육에 대한 규정은 ① 교육훈련에 대한 제8조,¹⁰⁾ 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제9조¹¹⁾와 ③ 차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규정인 제17조임.

이 중 ① 교육훈련에 대한 현행법 제8조와 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현행법 제9조는, 기술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과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에 해당함.

1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고 있음.¹²⁾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3월 기준 교육훈련기관 7개소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6개소를 지정함.

< 차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2025. 3. 기준) >

구분	지정일자	법인/단체명	소재지	인력양성 분야
1	'16.12.27.	사)푸른차 문화연구원	대구	다도 예절사 등
2	'16.12.27.	주)티립티 아카데미	서울	티 마스터 등
3	'17.04.12.	재)명원문화재단	서울	다도예절지도사
4	'17.05.12.	사)한국티협회	서울	티 스페셜리스트
5	'17.09.07.	사)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	전남	다도예절인문학당
6	'17.12.07.	사)우리차문화연합회	대구	차 문화 이해 등
7	'20.09.04.	장안대학교	경기	티바리스타 실무서비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3. 31.

1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현황(2025. 3. 기준) ＞

구분	지정일자	법인/단체명	소재지	인력양성 분야
1	'16.12.27.	사)푸른차 문화연구원	대구	차 제조 교육 등
2	'17.04.12.	재)명원문화재단	서울	다도예절지도사
3	'17.05.12.	사)한국티협회	서울	티 소믈리에
4	'17.06.15.	사)한국차인연합회	서울	다도교수
5	'17.09.07.	사)고려천태국제선차연구보존회	전남	전통차제다, 다도예절
6	'17.12.07.	사)우리차문화연합회	대구	차문화지도사 등

주: 자진반납 기관(국가식품연연구원) 1개 기관이 있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3. 31.

한편, ③ 현행법 제17조에 따른 차문화 교육 지원규정¹³⁾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차문화 교육과 그 외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의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전문기관 외의 기관(학교 등)을 통한 교육에 해당함.

현행법은 지원의 주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에 의한 지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요 생산지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차문화 관련 교육실시 현황 ＞

연번	사업
1	□ 학생차예절경연대회 ○ 사업비 : 20백만원/년, 전라남도 보성군 ○ 사업연도 : 1985. ~ 현재 ○ 사업내용 :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부문별 차예절 경연 진행 ○ 사업효과 : 미래의 주역들이 청소년들이 모여 전통문화인 차(茶) 예절을 거루는 경연을 함으로써 보성 전통차의 역사성, 차(茶) 문화를 널리 알리고 차세대 차인을 양성하는 계기 마련
2	□ 농업유산체험(다도·제다) 교육과정 운영 ○ 사업비 : 40백만원/년, 전라남도 보성군 ○ 사업연도 : 2020. ~ 현재 ○ 사업내용 : 다도체험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비 및 차량임차비 일부지원 ○ 사업효과 : 관내 지역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전통차의 역사성에 대한 교육과 차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차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녹차 수도 보성의 전통성과 역사적 명맥을 이어가고자 함
3	□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성전통차농업 전문가육성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 40백만원/년, 전라남도 보성군 ○ 사업연도 : 2017. ~ 현재 ○ 사업내용 : 차농업 3세대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녹차를 이용한 메뉴 개발 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 사업효과 : 보성전통차농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 제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창적인 보성차농업시스템의 유산적 보전가치를 향상
4	□ 하동 티마스터 전문가 육성과정 ○ 사업비 : 19백만원/년, 경상남도 하동군 ○ 사업연도 : 2025년 ○ 사업내용 : 티마스터(티소믈리에, 티블렌딩)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진행 ○ 사업효과 : 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차 문화 교육을 통한 하동 차 산업분야의 활성화 전문가 육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4. 14.

참고로, 네 개의 사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은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문화에 대한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는 보다 일상적인 교육 사업으로 보임.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업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의 목적이 전문가 육성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나. 안 제17조제1항: 학교에서의 차문화 교육 경비의 지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¹⁴⁾ 및 「고등교육법」 제2조¹⁵⁾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차문화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u>연구·개발</u>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u>시설·장비</u>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u>연구·개발</u> ,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u>시설·장비</u> 및 차문화 교육에 드는 <u>경비</u> 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14)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15)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차문화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안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수용함.

(2) 한국차 자조회

차문화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등)의 차문화 교육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①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②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상의 지원사항은 대체로 교육의 내용, 시설·장비 등 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그치고,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지원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유사 입법례에서 특정한 교육을 학교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비 또는 사업비 등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대조적임.

＜ 학교에서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등 지원 입법례 ＞

연번	사업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학교: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해양교육 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통일교육 지원법」
	※ 학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 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16.

또한, 현재 차문화 교육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사업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은 주요 생산지인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위주의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의 확대 필요성도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차문화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학교에서 차문화 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해 보임.

한편, 개정안의 문언 중 ‘드는 경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앞선 학교에서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입법례에서는 ‘사업비’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물론, ‘드는 경비’를 사용하는 입법례¹⁶⁾도 있어 개정안의 자구를 유지할 수도 있어 보이나,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입법례가 보다 많은 것으로 보임.¹⁷⁾

따라서,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6) [‘드는 경비’를 사용하는 주요 유사 입법례]

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7)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의 법률 조문내용 검색건수는 ① ‘드는 경비’ 152건, ② ‘필요한 경비’ 768건으로 나타남(2025년 4월 17일 기준)

다. 안 제17조제3항 신설: 차문화체험장 조성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교육을 위한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생 략)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7조제3항의 차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함.

(2) 한국차 자조회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차문화체험장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2) 검토의견

차문화는 그 정의가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임.

이와 같은 생활양식의 교육에 있어서는, 대상을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을 거쳐 체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방식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차문화의 교육을 위하여 차문화체험장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차문화체험장이 현행법 제18조¹⁸⁾에 따른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과 유사해 보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현행법 제1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현행법 시행령 제9조에서 차문화의 교육·전수사업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함.¹⁹⁾

1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발굴과 우수성 홍보 사업

2. 차의 제조방법 교육·전수 사업

3. 차문화의 교육·전수 사업

< 현행법령과 개정안 비교 >

구분	현행법령의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	개정안의 차문화체험장
근거조항	현행법 제18조	안 제17조제3항
구성주체	제한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	차문화체험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지원 (※ 차문화 교육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	구성 (※ 차문화 교육을 목적)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4.

개정안과 현행법 제18조 사이에는 ‘차문화 교육’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① ‘차문화체험장’을 직접 조성하는지, ② 운영 중인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지원하는지의 방법적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현행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도,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문화체험장 조성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다만, 현재 현행법 제18조에 따른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으로 ① 한국차박물관(전라남도 보성군), ② 하동야생차문화센터(경상남도 하동군)의 2개소가 있고, 추가적으로 경상남도 하동군이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할 차문화관 1개소가 2025년 완공 예정에 있음.

4. 차와 한식을 연계한 사업

5. 그 밖에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홍보, 차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과 관련된 사업

< 현행법 제18조에 따른 차문화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 현황 >

연번	기관
1	☐ 한국차박물관(전남 보성) ○ 개관 : 2010. 9. * 보성군 운영 ○ 운영 내용 - (체험관) 다례 교육, 차 만들기 체험, 차 음식 만들기 체험, 블렌딩 티 만들기 체험 등 - (박물관) 전시 및 관람시설
2	☐ 하동야생차문화센터(경남 하동) ○ 개관 : 2005. 5. * 하동군 운영 ○ 운영 내용 - (체험관) 다례 체험, 찻잎따기 체험, 덫음체험 등 - (치유관) 티클래스(티소믈리에, 에피소드 티), 차와 명상 등 - (박물관) 전시 및 관람시설
3	☐ 차문화관(부산) - (운영 예정) ○ (개관) 2025. 완공 예정 * 하동군 운영 ○ 운영내용 - (체험관) 티클래스(티소믈리에, 에피소드 티), 차 전시·판매, 차와 명상 등

주: 음영 처리한 부산 차문화관은 운영 예정인 기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3. 26.

이들 시설은 모두 순수 민간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투입하여 운영 중인 시설인데, 현행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체험관 ‘구성(설립)’에 대한 근거규정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지원’에 관한 규정임.

따라서, 안 제17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차문화체험장 구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여 운영하는 이들 체험관의 구성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안 제17조제4항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차문화 교육 경비 지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서 차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생략)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차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차문화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안 제17조제4항에 대하여 동의함.

(2) 한국차 자조회

차문화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차문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려는 것으로, 차문화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개정안은 앞선 안 제17조제1항을 통하여 현행법이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차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사항²⁰⁾에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데,

이와 연계한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문화 교육은 ① 학교에서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고, ② 학교 외에서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임.

< 현행법과 개정안의 아동·청소년 대상 차문화 교육 지원사항 >

구분	현행법	⇨	개정안
학교	제17조제1항	⇨	제17조제1항
	1.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2.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 3. 차문화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		1.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2.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 3. 차문화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 4. 차문화 교육에 드는 경비
학교 외	관련 규정 없음	⇨	제17조제4항 1. 차문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4.

2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아동’은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반면, ② ‘청소년’과 ③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연령 상한을 “19세 미만” 또는 “24세 이하”로 설정하여 법률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아동·청소년의 기준을 규정하는 현행 입법례 >

구분	연번	법률	연령 기준
아동	1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을 따르도록 규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8세 미만
	6	입양특례법 ²¹⁾	18세 미만
		(예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을 따르도록 규정)
청소년		(예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을 따르도록 규정)
	1	청소년 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2	청소년 보호법	만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
	3	청소년복지 지원법	9세 이상 24세 이하 (→ 청소년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
	4	농약관리법	만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 (→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
	5	담배사업법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만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

구분	연번	법률	연령 기준
아동 · 청소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2	다문화가족지원법	24세 이하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4.

다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의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이 경비를 지원하려는 교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이는 제1항과 같은
학교에서의 교육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도 충분히 교
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경비 지원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으로 한
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이 아님에도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별도
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으로서 특별히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21) 「입양특례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분리될 예정임

3. 부칙(시행일)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개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차문화 교육을 위한 경비 지원, 차문화체험장 조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차문화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차문화 교육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공포한 날
로 규정하는 경우 하위법령 정비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어려
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 중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해서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는 사례가 많은 점²²⁾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

2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821.